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61호(號) 1931(昭和 6)년 11월 18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65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1(昭和 6)년 11월 1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쌀[米], 벼[粳]
- 2 발 역(發 驛) 구마산(舊馬山), 마산(馬山), 북마산(北馬山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, 부산진(釜山鎭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보통임륜(普通賃率) 3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1(昭和 6)년 11월 18일부터  
1932(昭和 7)년 11월 17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1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하여 특정구간(特定區間) 통계(通計) 2500톤(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사람[者]에 대(對)하여 기수 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함으로 함.  
2 본(本) 임륜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사람[者]은 매월(每月) 아래[左]게 게시(揭示)한 양식(樣式)의 조서(調書)를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)에 제출(提出)함으로 함.

마산 발 부산 착 쌀 및 벼 운임조서[馬山發釜山著及粳運賃調書]

(월분[月分])

하송인(荷送人)

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通知書)	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톤수(噸數)	소정운임(所定運賃)	할인운임(割引運賃)	환급액(還給額)	
일부(日付)	번호(番號)							
계(計)								